

수출입 부대비용의 EPS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 물류·통관부문을 중심으로 -

심 종 석*
양 정 호**

-
- I. 서 론
 - II. 수출입 부대비용 및 EPS 지원체계의 현황
 - III. 물류·통관부문 부대비용 EPS 기반구축
 - IV. 요약 및 결론
-

주제어 : 수출입부대비용, 전자결제시스템, 단일창구

I. 서 론

일반적으로 수출입 부대비용이라고 함은 수출입 과정상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요소 중 수출입 결제대금을 제외한 여타 비용의 총칭을 의미한다. 당해 수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주저자)

** 상지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교신저자)

출입 부대비용의 범위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따라 또는 주체 간 항목별 수출입 계정관리의 특성에 따라 그 요목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개별 부대비용의 발생부문 및 특성을 기준으로 외환(상역)·결제, 요건확인, 수출입 물류·통관 부대비용 등으로 삼분되고 있음이 통례이다.

수출입 과정상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계정과목은 대략 95개 항목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연간 항목별 개별건수로 환산하면 그 누계치가 2,800만 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계량적 추계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신속·민활한 무역업무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 부대비용의 절감 내지 결제과정 단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및 그 기반으로 소위 전자결제시스템(electronic payment system : 이하 'EPS')의 활성화가 긴요함을 함의한다.

2008년 통계지표를 참조할 경우 국내 지급결제서비스 이용현황은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업무 이용건수 기준 약 33.7억건, 금액기준 약 22.0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비금융기관의 EPS 서비스 시장이 각양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결제대행업무(electronic payment gateway)를 중심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이하 'IPS')를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상례화 되어가고 있음에 기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출입 부대비용 부분의 EPS 서비스 내지 솔루션 도입은 대다수 수출입 결제대금 수취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일부 주요 기업 또는 금융기관들을 제외하고 여전히 개별청구 또는 항목별 단일결제에 의지하고 있어 수출입 부대비용 전반의 현황파악을 통한 지원체계 및 기업의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업무 지원을 위한 EPS 통합 솔루션 제공에 적잖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수출입 부대비용의 EPS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당해 활성화의 기반구축에 선결되어야 할 요건으로서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 유통방식의 도입, 전자문서의 표준화, EPS 모델 및 플랫폼, 화환취결 시 전자문서의 발급절차 및 기본 골격 등을 중심으로 각 사안별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EPS 기반구축의 순기능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출입 부대비용의 절감을 모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하고 있는 무역기업들을 위해 실현가능한 EPS 플랫폼 내지 기업내 ERP 연계를 통한 수출입 부대비용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본 모듈 및 시사점을 제시하여 이로부터 신속·민활한 수출

입 상역활동의 기반제공에 적의 참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수출입 부대비용 및 EPS 지원체계의 현황 및 요건

1. 수출입 부대비용의 구분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부대비용의 결제추이는 종이문서(paper based documents)를 기반한 전통적 상거래에 견주어 IPS를 통한 업무자동화, 기업간 B2B 상거래 업무지원을 위한 ERP 도입, single window 기반 uTradeHub 서비스 등의 파급효과에 따라 수출입 기업의 무역업무처리 프로세스가 현격히 개선 또는 개선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웹기반 무역업무자동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개선 및 EPS를 위한 펌뱅킹 등의 활성화에 따라 수출입 업무지원 프로세스의 체계가 날로 견고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주로 대기업, 대형선사 및 주요 외국환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수출입 기업 전체에 있어 광대역 EPS로의 정보화 전환 내지 IPS 도입에 따른 기반구축은 실질적으로 그 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출입 과정상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외환·결제 부대비용, 요건확인 부대비용, 물류·통관 부대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해 요목별 구성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입 시 외환·결제부문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신용장내도통지수수료 외 수출부분 19종, 수입부분 16종의 수수료 및 기타 비용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 수출부분은 매입은행 화환취결 시 발생하는 제 비용과 수출보험·적하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리 수입부분은 신용장개설·내국신용장·적하보험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

1) 외환 관련 주요 부대비용의 내역을 열거하면, 신용장통지수수료, 신용장당도수수료, 신용장 확인수수료, 화환취결수수료, 구매확인서발급수수료, 수출실적확인서발급수수료, 내국신용장발급수수료, 내국신용장매입어음이자, Local Nego 취급수수료, 내국신용장수수료(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내국신용장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어음매입에 응하지 않고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서 부과되는 수수료), 신용장발행수수료, 신용장조건변경수수료, 신용장

둘째 수출입 시 요건확인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수출부문 9종, 수입 부문 31종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역업체 및 무역 관련 업체가 화물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요건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 또는 지정(관할) 협회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납부하는 수수료로 구성된다. 예컨대 통관 전후의 허가·추천·신고·검사·양허·할당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보험부문은 화물의 안전한 운송과 물품의 제반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보험회사·수출보험공사와 계약하는 보험료가 대표적이다.²⁾

셋째 물류·통관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경우에는 업체간 계약의 내용·방법에 따라 결제시점·결제방법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경우 물류 부문은 부대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화물이 실질적으로 보관·운반 되거나 화물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시 발생된다. 계약조건에 따라 항공·해상운임이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부담되고, 특히 수출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항목은 컨테이너세·통화할증료·유가할증료가 대표적인 내역이다. 수입과정에서는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급받아 수입업체에게 인도할 책임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서류발급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한편 통관부문은 안전한 운송과 창고에서의 분실 또는 화재 등의 위험 및 수출자체의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이 수출입 과정에 있어 당해 요목에 따라 발생한다.³⁾

인수수료, 수입화물선취보증서발급수수료, 수입어음결제수수료,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개설 전신료, 수입화물선취보증서조건변경수수료 등이다.

- 2) 주요 부대비용의 내역은 수출승인증명서발급수수료, 원산지증명발급수수료, 수입승인허가서 발급수수료, 검역확인서발급수수료, 검사확인서발급수수료, 수출보험료, 적하보험료 등이다.
- 3) 주요 내역은 창고보관료, 내륙운송료, THC, FHC, B/L발급비, 해상운임, 탄소장치허가수수료, CFS비용, ODCY장치료, 컨테이너세, 화물입출항료, 관세사수수료, 관세, 파출검사 및 입시개청수수료 등이다. 참고로 수출입 물류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상세는 이재광 외, “수출입 물류의 e-Seal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Entrue Journal of IT」, 제7권 제1호, 2008. 1. pp.134-135.

〈표 1〉 수출입 부대비용 내역4)

구 분		내 역	건 수	비 고
외환결제 부대비용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용장 : 통지수수료 포함 6종 수출환어음 매입 : 취급수수료 포함 8종 구매확인서발급수수료, 수출실적발급수수료 단기수출보험 : 보험료, 수입자 신용조사 적하보험료 	370 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환결제 : 35종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신용장 : 개설수수료, 개설변경수수료 수입환어음결제 : 결제수수료, 개설변경수수료 L/G수수료, 수입환어음추심수수료, 전신료, 외화표시 지급보증수수료, 하자수수료 내국신용장 : 개설수수료 포함 4종 적하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건확인 : 40종 통관 : 6종
요건확인 부대비용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 포함 총 9종 	20 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 14종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반 협회인증 포함 총 31종 		
물류·통관 부대비용	통관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사수수료, 관세, 파출검사수수료, 임시개청수수료, 보세구역외장치허가수수료, 물품취급시간외물품취급수수료 	2,467 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계 : 95종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항 : 화물입출항료, THC, C/TAX, DOC, 하역 : 하역료, CFS조작비, 검수료 보관 : 보관료, 출고상차료, 화물화재보험료 운송 : 내륙운송료, 해상운송료, 항공운송료 기타 : 취급수수료(Handling Charge) 		

2.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방식 및 전자화 현황

수출입 과정상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개별 항목별로 당해 결제가 수행되고 있는데, 결제방법 역시 인터넷뱅킹·외상거래·어음·지로 등 다양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다수의 부대비용 결제채널이 분산되어 있어 이로 인한 비효율이 상당한 실정이다.

첫째 우선 외환·결제부문 부대비용 처리 프로세스는 신용장 내도, 신용장 양도 등 제반 비용발생 시 은행에서 화주에게 통보하고 화주가 당해 비용을

4) 상세는 지식경제부, “우리기업을 위한 원스톱 전자무역서비스 구축 추진”, 「보고자료」, 2009. 7. 6.

5) 상세는 한국조세연구원,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관·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2010. 3.

확인 및 납부토록 구성되어 있으나, 개별 부대비용 종류에 따라 또는 결제방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부대비용(수수료) 상계 후 그 결제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외환·결제 부대비용 중 적하보험료의 경우 현재 uTradeHub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보험사에서 당해 신청건에 대한 심의·청약 승낙 후 보험료를 계산하여 지로를 통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이 상례이다.

둘째 요건확인부문 부대비용 처리 프로세스는 요건확인 기관에 따라 부대비용 결제방법 및 결제 시점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전자지불(electronic fund transfer : 이하 ‘EFT’)을 통한 수수료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uTradeHub에서는 수출입 업체의 요건확인 및 관련 업무편의를 위해 KTNET의 single window 기반⁶⁾ 전자민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요건확인 민원업무 및 세관업무를 연계하고는 있으나, EFT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바, 부대비용 결제는 요건확인과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물류·통관부문 부대비용처리 프로세스는 업체간 계약에 따라 결제시점과 결제방법이 결정되며, 물류·수송 완료 후 비용정산을 통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분에 대한 결제가 요구된다. 당해 부대비용은 타 부대비용과 달리 기업간 B2B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며, 특히 B/L, AWB 등 무역업무 수행 및 화환취결에 따른 업무수행 시 서류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타 부대비용 대비 각 요목에 대한 관리·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6) 전자무역에 관한 single window의 파급효에 관한 상세는 김용재,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5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12. pp.89-92.

〈표 2〉 수출입 부대비용(수수료) 부문별 결제방식 및 전자화 현황

분 류	부대비용	관련기관	지불주체	결제방식	전자화현황			
					청구	결제	증빙	
일반	수출	수출승인증명서	승인업체	수출업체	회비정산	●	◎	●
		원산지증명서	대한상의		현장납부	●	◎	●
		비자발급	기관/협회		계좌/지로	●	◎	●
	수입	수입승인증명서	승인기관	수입업체	현장납부	●	●	●
		검역·검사확인서	검역검사기관		계좌/지로	●	●	●
외환	수입	은행	수입업체	현장납부 계좌/지로	신용장발행	○	◎	●
					신용장조건변경	●	◎	●
					신용장인수	●	◎	●
					L/G발급·조건변경	●	◎	●
					L/G개설전신료	●	◎	●
	수출		수출업체	현장/계좌	수입어음결제	●	●	●
					신용장통지·양도	●	◎	●
					신용장확인	●	◎	●
					구매확인서발급	●	◎	●
					Nego취급	●	●	●
					내국신용장발급	●	◎	●
					수출실적확인서	●	●	●
					내국신용장어음매입	●	◎	●
					Local Nego 취급	●	●	●
내국신용장추심	●	◎	●					
보험	수출	수출보험공사	수출업체	현장납부 계좌/지로	수출보험료	●	◎	●
					적하보험료	●	◎	●
	수입	보험회사	수입업체	만기결제	●	●	●	
통관	수출	관세사	수출업체	현장납부 계좌/지로	관세사	●	●	●
					파출검사	●	●	●
					임시개청	●	●	●
	수입	관세사	수입업체	만기결제 계좌 현장/계좌	관세사	●	◎	●
					관세	○	○	○
					파출검사	●	●	●
임시개청	●	●	●					
물류	수출	창고업체	수출업체	현장/만기 계좌/지로	영업용창고보관료	●	◎	●
					내륙운송료	●	◎	●
					THC	●	◎	●
					FHC	●	◎	●
		포워더 타소장치장 장치장		B/L 발급비	●	◎	●	
				운임	●	◎	●	
				타소장치허가	●	●	●	
				ODCY 장치료	●	●	●	
	선사	CAF·BAF	●	◎	●			
		운임	●	◎	●			
수입	운임	선사	수입업체	만기결제	●	◎	●	

구분) ○ : EDI, ◎ : 인터넷뱅킹, ● : 오프라인의 예시임.

〈표 3〉 수출입 부대비용(수수료) 부문별 결제방식의 문제점

결제방법	내 용	문제점
현장납부	• 발생 부대비용을 유관기관에 직접 납부(현금)	• 소액·다발성 결제수단 • 직접방문 (입금확인 불필요)
무통장입금	• 발생 부대비용을 은행계좌에 입금 (은행방문, 현금)	• 직접방문(입금확인 필요)
계좌이체	• 발생 부대비용을 납부자 계좌에서 이체 (은행방문, 현금)	• 직접방문 (입금여부 확인절차)
	• 인터넷뱅킹 이용 납부자 계좌에서 이체	• 기관 방문 불필요 • 입금여부 확인절차 필요
지로납부	• 유관기관 명의 지로를 통해 납부 (현금 또는 계좌이체)	• 우편 방식 • 다발적 지로납부의 불편 상존
신용카드	• 발생 부대비용을 신용카드를 통하여 온라인 납부	• 보편적 결제수단 • 취급 유관기관 한정되어 실제 적용의 어려움 상존
기업구매 카드	• 은행이 카드결제방식으로 선지급, 구매기업은 대금상환	• 보편적 결제수단이 아님
전자외상 매출채권	• 은행과 전자외상매출채권거래계약을 체결한 무 역업체가 발생 부대비용을 납부할 경우 유관기 관을 채권자로 지정, 일정금액·시기에 대한 지 급확약 후 발행하는 채권 • 전자적으로 발행되어 발행내역은 중앙관리기관 인 금융결제원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되고 만기 시 입금	• 고액 만기결제 경우 전자 외상 매출채권 이용 응용 결제 가능
어음할인	• 무역업체 발행의 유통어음을 은행이 매입, 자금 대여	-

〈표 4〉 무역업체의 EPS 이용도와 요구수준⁷⁾

상역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청구 및 납부증빙서류 오프라인 처리 • 전반적 상역 관련 문서의 전자화 미비
	이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방식의 소액결제 위주 • 기관별 현금·현장결제·계좌이체 등 오프라인 결제와 인터넷 뱅킹 병행
	요구수준	• 기관방문결제·은행방문결제의 다중방식에 의한 업무 비효율성 상존
외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통지수수료 등 일부분 EPS 시행 중 • 화환취결수수료 등의 경우 신용장 원본 입증 등의 선결과제가 부각 • 지급청구 및 납부증빙서류 등 오프라인 처리
	이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계좌자동이체 및 예치금 정산방식의 고객 사후결제 위주 • EDI 서비스 약정 기업에 국한하여 혜택을 받고 있음
	요구수준	• 기존 결제방식에 큰 불만이 없어 신규 EPS 요구수준이 낮음 상황
보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I 구현되어 있으나 기존 관행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 • 지급청구 및 납부증빙서류의 비표준화로 대개 오프라인 처리가 상례화 되어 있음
	이용도	• 현금·현장결제·계좌이체·어음결제 등 오프라인과 인터넷뱅킹 병행
	요구수준	• 관행에 따른 팩스업무 및 지로청구 및 계좌이체 중심
통관	현황	• EDI 구현되어 있으나 이용률 저조하고 수수료 발생빈도가 적고 불규칙적인 특성
	이용도	• 관세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오프라인 처리(관세사수수료 경우 인터넷뱅킹 이용)
	요구수준	• 비효율성으로 인한 개선요소 존재(다만 직접적인 요구수준은 낮은 상황)
물류	현황	• 무역업체 및 물류업체간 외상거래 관행이 고착(계좌이체와 인터넷뱅킹 보편화)
	이용도	• 외상·어음 등의 관행적 오프라인 결제방식이 상례화되어 있음 (고액결제위주)
	요구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행에 의거한 결제업무 위주 • EPS 도입·확산 시 업무 효율성 향상·제고가 기대

7) 〈표 2~4〉는 다음 보고서를 참조하여 재구성. KTNET, “무역업체의 결제 프로세스 전자화 수준 동향파악 보고서”, 「무역업무 프로세스 혁신 BPR」, 2009. 10.

3. EPS 지원체계의 모델과 요건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입 부대비용은 종류가 다양하고 부대비용별 결제방법이 상이하여 이를 관리하는데 있어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대부분의 무역업체에서는 포워드·관세사·수출입대행 등을 통해 부대비용을 처리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를 신속·민활하게 도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의 모델과 요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역업무 단일 인터페이스 제공

무역업무는 요건확인업무와 통관업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업간 상거래인 까닭에, 정확한 부대비용 규모와 업무 프로세스 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때문에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수출입 부대비용의 관리와 절감노력이 중요함에도 당해 과정과 절차를 기업 내부의 자체 프로세스 개선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인 바, 결국 국가차원의 법·제도적 지원책 내지 비용절감을 위한 광대역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현재 국가주도 영역인 통관 부대비용을 제외하고는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입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현황파악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전자무역 업무에 대한 단일 인터페이스, 곧 범용 single window 기반 원스톱 플랫폼의 제공과 부대비용 결제지원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수출입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주요 항목관리와 또한 부대비용 증가원인을 시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부대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방안의 설계·제시가 요건으로 부각된다.⁸⁾

2) 부대비용 통합관리 지원

무역업체 입장에서 수출입 부대비용은 비용별로 청구자와 결제시점이 각기 상이한 바, 당해 비용관리가 어려워 정확한 수출원가의 예측·관리에 상당한

8) 글로벌 전자무역 플랫폼의 개괄적 상세는 심재희, “u-Trade 시스템 환경하에서 전자무역 네트워크 접근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9권 제5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12. pp.124-129.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편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한 바, 결국 이 같은 적시는 무역 단일창구를 이용해 부대비용 결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출입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의 확보 및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원가계산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업 스스로 부대비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3) 부대비용 EPS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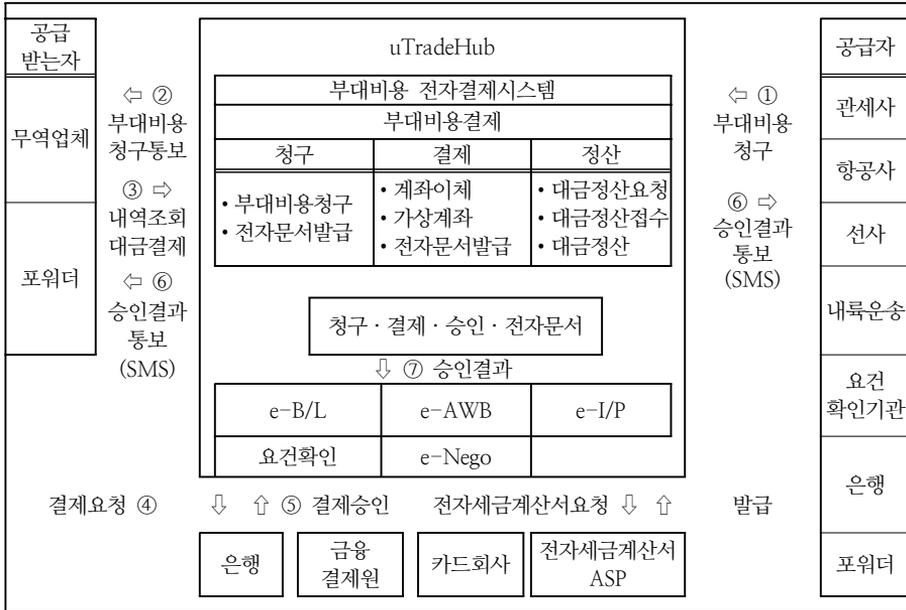
통계청의 2008년 연간 전자상거래 동향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총거래액은 629조 9,670억원으로 2007년 대비 113조 4,530억원 (22.0%)이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부문별 거래비중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총거래액의 88.9%인 560조 1,35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 (B2G)가 8.3%,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가 1.9%, 그리고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 등)는 0.9%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EFT가 일반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부문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간 제한적 인터넷 बैं킹 등에 의존하고 있을 뿐 무역 부대비용 결제를 위한 청구·결제의 전자화, 영수증 등 결제서류의 전자화가 미비한 상황이다.

B2B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대비용을 전자적으로 결제하고 각종 상거래 관련서류를 전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이 긴요한 실정이다.⁹⁾

9) 전자적 물류서비스 파급효에 대해서는 임준형, “국제물류업체의 IT 수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3. pp.79-83.

〈표 5〉 uTradeHub 전자결제서비스 목표모델



Ⅲ. 물류·통관부문 부대비용 EPS 기반구축

본 연구에서 수출입 부대비용 중 특히 물류·통관부문 부대비용 EPS를 그 주된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물류·통관부문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처리가 연간 약 2,500만건으로 전체 부대비용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다른 여타 부대비용에 비해 물류·통관부문 부대비용 EPS 기반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요건대 물류·통관 부대비용 EPS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부대비용 결제시 발생하는 서류의 전자화 및 전자문서 유통방식 도입이 필수적이다.¹⁰⁾ 곧 전자문서 유통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의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물

10) 심종석,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4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4. 3. II-III.

류·통관 부대비용 EFT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청구 및 결제모델의 분석과 특히 e-B/L·e-AWB 등 화환취결 시 필요한 전자문서 발급절차 분석이 요구된다.¹¹⁾

1. 물류·통관 부대비용 EPS 구축의 내용

우리나라의 물류시장 규모는 2007년 97조, 2010년에는 119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국내 물류시장의 경우 독특한 경쟁구도와 경직된 시장특성으로 인해 단일시장이 협소하여 물류전문기업들이 윈스톱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갖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이슈에 직면해 있다.

부대비용 결제에 있어서도 온라인을 통한 업무자동화, 기업간 B2B 거래 증가 등으로 수출입 기업 역시 무역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무역업무시스템 도입, 결제를 위한 펌핑킹을 도입하는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무역 물류부문에 있어서도 물류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같은 변화가 아직은 대기업과 대형선사 등 주요 기업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여전히 수출입 기업 전체에 있어 물류 부대비용 결제부문 정보화의 전환은 미약하여 당해 부문의 정보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1) 물류·통관 부대비용의 특성

물류부대비용은 운임 및 화물의 선적·양하·운송서류 발급 등의 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를 의미하며, 대개 물류(운임)비용과 함께 청구된다.¹²⁾

11) 참고로 본 고는 물류·통관부문 부대비용에 관한 EFT 활성화를 목표로 두었으나, 이는 요건확인, 외환·결제부문에도 공히 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물류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관한 상제는 정행득 외, “경제 활성화와 물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제19권 제2호, 한국물류학회, 2009. 6. III.

12) 참고로 화물운임료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의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터미널화물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 : THC) : 화물이 CY에 입고된 때부터 본선의 선측까지(송하주인 수출상이 부담),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정문을 통과하기까지(수하주인 수입상이 부담)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다. ② CFS Charge : LCL화물의 경우 선

한편으로 수출입 부대비용 중 물류 부대비용은 타 부대비용에 비해 전자결제의 지원이 어렵다. 곧 물류 부대비용 전자결제의 제약요인은 근본적으로 기업 간 상거래(B2B 거래)로써 청구 및 결제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어렵고, 참여 기업의 영세성·어음지급거래의 빈번·관행에 의한 거래 등의 특성에 기인한다.

2) 물류·통관 부대비용 EPS 지원의 필요성

물류부문의 전자결제는 타 서비스와 달리 EFT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 부대비용의 경우 EFT가 지원될 경우 타 부대비용에 비해 그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당해 실효성의 주요 내용을 도출하면, 첫째 우선 B/L, AWB 등 화환취결 시 필요한 서류발급과 연계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대은행 화환취결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 둘째 물류업체에 있어서도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어음지급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현금의 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으며, 셋째 물류비용 관련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넷째 수출입 업무절차의 간소화·명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로부터 물류 부대비용 결제에 EFT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물류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부대비용 전자결제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적항 및 도착항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에 드는 비용이다. 운송인은 하주로부터 이를 받아 CFS 운영업자에게 전달한다. ③ 컨테이너세(Container Tax) : 1992년부터 항만 배후도로를 운송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부산시가 20ft 컨테이너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이 경우 환적이나 연안수송에 쓰이는 컨테이너·공컨테이너·군화물은 비과세대상이나 철송화물은 과세대상이다. ④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 B/L과 D/O의 발급 비용. ⑤ 부두사용료(Wharfage) : 안벽·잔교 등을 거쳐 운반되는 모든 화물에 부과되는 비용. ⑥ 체선(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 하역작업을 위한 선박의 대기시간이 길어져 선사측에 추가적인 경비 발생 시 일정기간에 대해 하주에게 부과한다. ⑦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 CAF) : 운임표시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일정비율이나 일정액을 부과한다. ⑧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 BAF) :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일정비율이나 일정액을 부과한다. ⑨ 지체료(Detention Charge) : 하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규정된 시간(free time) 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내는 비용이다. ⑩ 성수기 부대비(Peak Season Charge) : 컨테이너 수급불균형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 등이다.

3) 물류·통관 부대비용 EFT 현황

전자지불은 유·무선 통신망, 컴퓨터·휴대전화·PDA 등의 H/W·S/W·D/B 지원 등을 기반으로 EFT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지불은 크게 유·무선 통신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지불서비스와 전자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전자문서 유통 등 전자지불지원서비스로 구분된다. 우선 전자지불서비스는 전자화폐·전자지불대행·기업간 전용 전자지불 등으로 직접적인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전자지불 수단으로서 전자화폐와 전자수표 등의 발행·관리, 전자지불솔루션 개발 또는 전자지불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총칭하며, 달리 전자지불지원서비스는 신용카드대행·계좌이체대행·모바일지불대행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대행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 신용카드 정보로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계좌이체대행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전자적으로 대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아울러 MC 지불대행서비스는 Mobile·PDA 등 무선기기를 활용한 지급·결제서비스로 이동통신사의 사용료에 합산하여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기업전용 전자지불서비스는 실질적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유형으로 특정할 수 있는데,¹³⁾ 곧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은행(카드회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전자지불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전자지불서비스는 물품·서비스 거래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다. 전자지불서비스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수반되는 대금지불서비스를 현금·수표 등 기존의 지불수단을 대체하여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자지불서비스는 일종의 디지털상품인 바, 생산과정에서 한계비용이

13) 전자외상매출채권시스템은 기업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곧 은행과 사전약정에 의해 물품 구매 후 판매자를 채권자로 지정, 구매대금을 일정시점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는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시스템의 주요 결제 모듈의 하나로 특정할 수 있다.

계속 체감하는 규모에 대한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규모가 커질수록 구성원들의 효용이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전자지불산업은 최첨단 기술수준을 사용하는 산업으로 이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자금을 이전하는 서비스이므로 우수한 IT에 기초하여 발전하게 된다.¹⁴⁾

넷째 전자지불서비스가 사용되려면 이에 따른 상당한 인프라 투자가 요구된다. 곧 당해 서비스는 정보기기 및 이에 적합한 S/W가 설치되어야만 작동하는데, 이에 대한 설치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공재 및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바, 이는 전자지불서비스의 비배타성이 존재하므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이유에 비롯된다. 즉 전자지불서비스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더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과거 금융기관의 독점사업이었으나 최근 비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지불수단은 비은행기관이 개발하거나, 직접 발행하였고 혹은 발행에 참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최근 온라인시장 물품거래시 제공되는 결제서비스는 주로 PG(Payment Gateway) 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무선결제 역시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른 한편 국내 물류 부대비용의 전자지불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상거래 규모나 건수를 고려할 경우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현재 수출입 물류부문만을 특화하여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B/L·AWB 등 수출입 기업이 화환취결 시 필요한 문서와 연계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곧 국내 전자무역을 이끌고 있는 KTFNET에서 2005년 이후 물류부문 부대비용 지원을 위해 e-TB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당해 서비스를 수혜하고 있는 기업이 적고, 다만 B2B 계좌이체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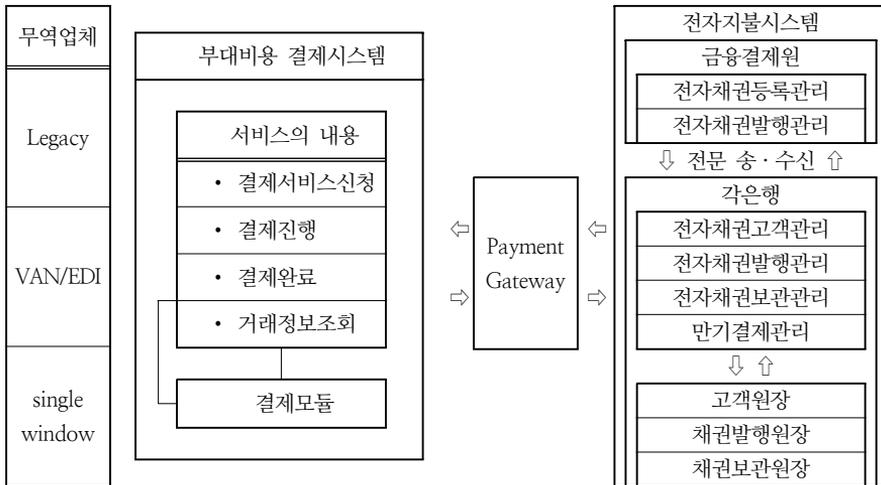
또한 화환취결 업무와 연계가 되고 있지 않아 B/L·AWB 등을 발급하는

14) 실제 사례에 관한 상세는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첨단물류 IT 기술”, 「해양한국」, 2010. 4. pp.62-64.

15) 수출입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의 성과에 대한 상세는 김태인 외,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8. 12. pp.7-13.

포워드·선사·항공사 등의 전자무역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내 수출입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적 화환취결과 결합된 수출입 물류부문의 부대비용 결제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전자지불서비스의 기반 플랫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전자지불(전자외상매출)시스템의 적용 플랫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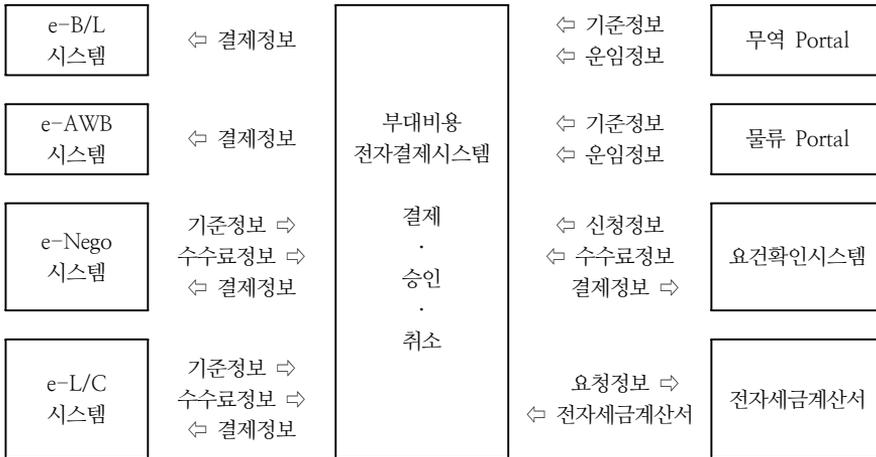
4) 물류·통관부문 부대비용 EPS 기반구축 방안

가. e-B/L, e-AWB 등 전자문서 연계

물류부문 부대비용 결제시스템 구축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e-B/L·e-AWB 등 화환취결 시 필요한 전자문서와의 연계를 통해 오프라인 서류발급 비용절감 지원과 수출입 기업과 선사·항공사 등 물류기업의 부대비용 결제서비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부대비용 EPS는 이하 표와 같이 e-B/L·e-AWB·e-Nego·e-L/C 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당해 결제정보를 제공하고, 결제확인 후 e-B/L 등 전자문서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e-B/L·e-AWB 등을 발급하는 선사·항공사의 물류 부대비용에 관한 전자결제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부대비용 결제시스템과 uTradeHub 연관시스템과의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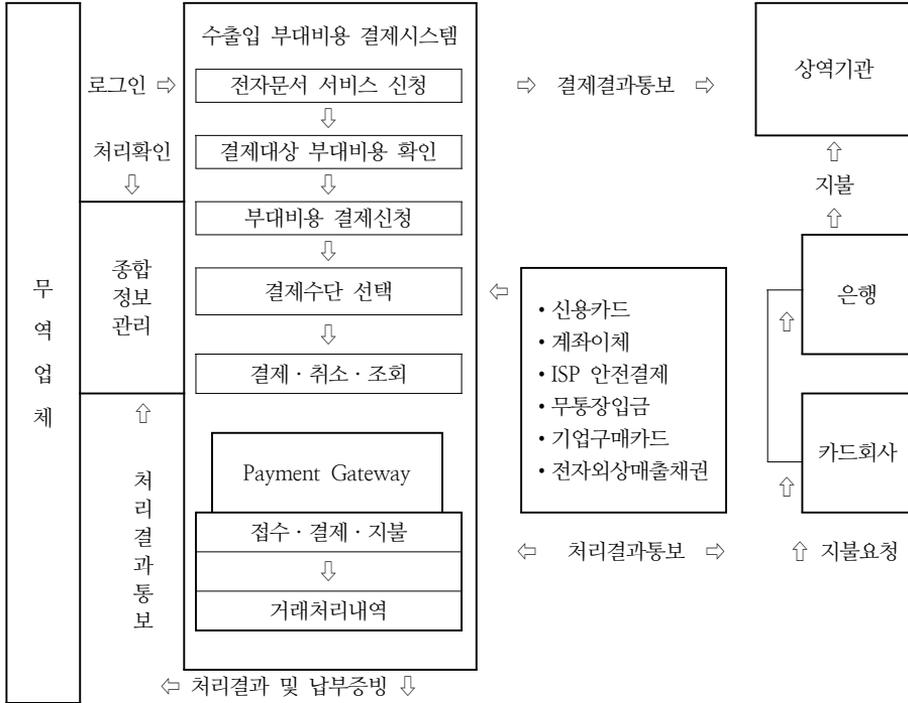
나. 다양한 결제수단 지원

기존 물류·통관 부대비용 결제서비스는 B2B 현금결제만 제공하고 있어, 수출입 물류의 오랜 관행인 어음지급거래를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 실무상 물류업체나 화주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물류 부대비용 결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어음지급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제공이 중요한 바, 이에 신용카드결제, 모바일 등의 결제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화주 입장에서는 결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물류업체에게는 현금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제공할 경우 결제수수료에 대한 물류업체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으나, uTradeHub와 같은 중계기관에서 신용카드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당해 수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물류업체의 입장에서 1~3개월 정도의 어음지급거래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부분 수수료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당해 결제수단 지원 서비스의 기본 플랫폼을 제시하면 이하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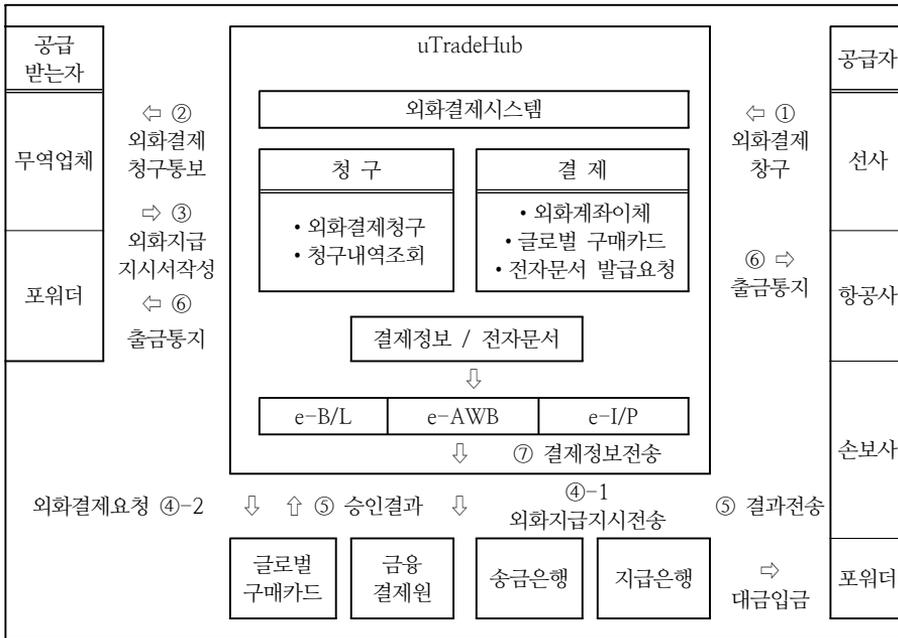
〈표 8〉 다양한 결제수단 지원 서비스의 목표 모델



다. 외화결제 지원

물류 부대비용 중 해상·항공운송 등 특정 비용의 경우 외화로 결제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물류 부대비용 결제지원을 위해서는 외화결제 요구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표 9〉 부대비용 외화 결제시스템 목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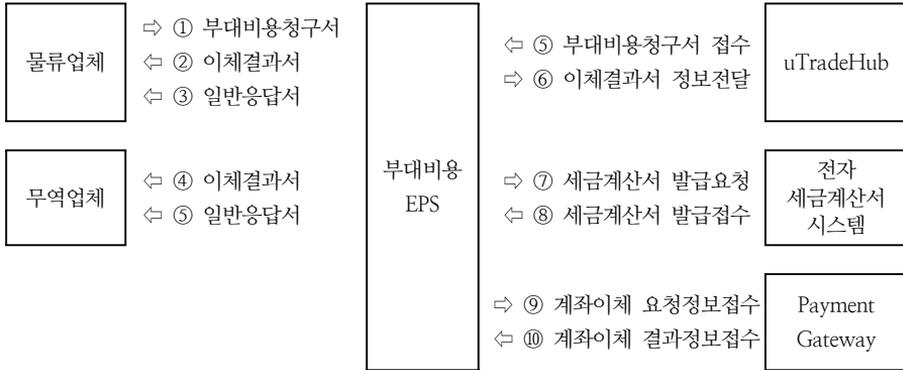


아울러 국내 외화결제의 경우 법제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외화 부대비용 결제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출입 업체가 송금신청 후 최대한 신속하게 당해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e-B/L · e-AWB 등 물류업체가 발행하는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계좌이체 외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함으로써 편리하게 외화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이와 연계되어야 한다.

라.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문서 지원

수출입 물류 부대비용 결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 영수증 등 기존 거래에서 발생하는 결제 관련 서류의 전자화 및 전자문서 지원이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이후 의무화되어 전자지불서비스 제공 시 전자세금계산서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표 10〉 전자문서 및 부대서류의 전자화 지원 목표모델



2. 물류·통관 부대비용 EPS 구축의 필요성

1) 물류·통관 부대비용 현황

수출입 통관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관세청에서 청구하고 있는 부대비용과 수출입 통관 시 발생하는 요건확인 수수료 및 관세사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청에서 청구하는 부대비용은 관세 외 파출검사수수료·임시개청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건확인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부문 9종, 수입부문 31종이 발생하고 있다.

통관부문 부대비용 중 요건확인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세청에서 청구하는 수수료가 대부분인데, 당해 수수료 결제시스템은 현재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 경우 통관 부대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세의 경우 국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환급 프로세스가 결합되어 있다.

2) 요건확인 수수료 결제 지원 방안

현재 요건 확인기관 중 발생건수가 빈번한 주요 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자지불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리 기타 기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발생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적어 대부분 계좌이체, 직접 납부 등 방법으로 수수료를 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출입 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출입 업무수행 시 요건확인 신청과 수수료 결제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단절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단절없는 원스톱 수출입 업무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요건확인 기관에 대해서는 전자지불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 결제시스템 제공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uTradeHub에 연계된 요건확인 기관 중 선납 수수료 결제를 요청할 경우 요건확인 신청 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요건확인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uTradeHub의 요건확인 기관 중 후납 수수료 결제를 요청할 경우 요건확인에 대한 승인 후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승인문서를 세관으로 전송하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3. 물류·통관 부문 부대비용 EPS의 요건

1) 편의성 확보

전자결제서비스 활성화의 선결요건은 무엇보다도 신속·민활한 편의성 확보가 선결요건이다. 전자결제서비스는 이미 널리 통용되는 현금·수표·신용카드 등 전통적 지불서비스를 최신 IT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인 까닭에, 이들 전자결제서비스는 전통적인 서비스와 서비스시장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차체에 이들 서비스 보다 편의성이 돋보여야 한다.

한편 전자결제서비스 시장 내에서도 각양의 다양한 전자결제서비스가 명멸하게 되는 바, 이때 특정 전자결제서비스가 견고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타 전자결제서비스보다 편리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즉 부대비용 전자결제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이어야 한다.

2) 호환성 담보

전자결제서비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상의 재화라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네트워크재화차지는 사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므로 전자결제서비스의 활성화 요건은 다른 네트워크와의 상호 연계가능성과 호환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결국 당해 제품의 호환성이 증가할 경우 사용자들은 보다 많은 방식을 통하여 보다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불 할 수 있는 까닭에, 곧 전자결제서비스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려면 당사자가 필요한 곳에서 시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전자결제서비스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공급자의 경우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므로 이윤이 증가할 수 있게 되는 특성을 적의 고려하여야 한다.

3) 신뢰성 확보

전자결제서비스의 신뢰성은 당해 서비스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모두 신뢰하고 의사교환 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컨대 전자결제서비스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기에 현금이나 수표와는 달리 사용자가 직접 대금결제서비스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당해 시스템을 이탈 내지 거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전자결제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성이 구축이 선결요건으로 부각된다. 예컨대 전자결제서비스의 청구자 직접모형의 경우 대금청구자가 직접 전자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 받을 경우 관계당사자는 이미 대금청구자를 인식하고 있기에 동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불안감이나 심리적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전자결제서비스는 비록 당해 서비스에 일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면 당해 서비스가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전자결제서비스에 대한 신뢰감 및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서비스 최초 공급 시에는 서비스 자체보다는 공급기관에 대한 신뢰가 우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정확성 및 안전성 제공

전자결제서비스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지불서비스는 직접적인 대금 이전 서비스이므로 관련 정보가 안전·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 서비스가 불안정하거나 정확하지 않다면 사용자들은 사용빈도를 크게 줄일 것이다. 따라서 전자지불서비스 공급자는 전자지불서비스의 안정성 및 정확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에 매우 우수한 지급서비스가 초기 정확성이나 안정성 부문에서 일부의 문제점 때문에 사용자가 회피한다면 이후 이들이 개선된 다음에도 소비자들의 사용을 늘리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고는 수출입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전자결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대비용별 적용방안, 특히 물류·통관부문의 전자결제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실무적용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부대비용 종류와 현황을 분석하고 부대비용별 적용방안, 물류 부대비용과 통관 부대비용의 결제현황을 분석하고 당해 문제점과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물류 부대비용의 경우 B2B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환취결 시 필요한 제반 부속서류와의 연계를 통해 각 부대비용의 전자결제를 지원하고 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는 다양한 결제수단의 제공, 외화결제지원 등을 통해 수출업체와 물류업체가 공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여타 시스템과의 호환·결제에 대한 신뢰·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부대비용 결제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선결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single window 기반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 업체 내지 물류업체 등 국가 전자무역 uTradeHub 이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추후 부대비용 계산을 통한 원가예측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 맞춤 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부대비용 관련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성적 효과를 도출하면 다음 각 항과 같다.

첫째 부대비용 결제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이다. 그 내용은

single window 기반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부대비용 계산을 통한 원가예측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대비용 관련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 향상 등이다.

둘째 수출입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수출입 부대비용 관련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다. 곧 정보화를 통한 수출입 무역업체 및 관련 기관의 업무절차 개선, 수출입 무역업체의 부대비용 관리체계 향상, 은행 및 유관기관 방문 등 수작업 개선 등이 기대된다.

셋째 전자문서 지원을 통한 기업업무 지원이다. 당해 실효성의 핵심은 청구서·영수증(입금표) 등 부대비용 거래 관련 서류의 전자화를 통한 발급 및 관리 효율화, 전자세금계산서 ASP 연계를 통해 발급·처리 업무의 간소화를 지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넷째 uTradeHub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환, 상역, 물류·통관 등의 분야에서 e-B/L·e-AWB·e-I/P 등의 발급주체인 선사·포워더·보험사들의 적극적인 uTradeHub 참여확대로 당해 관련 업무의 신속·민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참 고 문 헌

- 김용재,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9권 제5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12.
- 김태인 외,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8. 12.
- 심재희, “u-Trade 시스템 환경하에서 전자무역 네트워크 접근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9권 제5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12.
- 심종석,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4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4. 3.
- 이재광 외, “수출입 물류의 e-Seal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Entrue Journal of IT」, 제7권 제1호, 2008. 1.
- 임준형, “국제물류업체의 IT 수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3.
- 정행득 외, “경제 활성화와 물류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제19권 제2호, 한국물류학회, 2009. 6.
- 지식경제부, “우리기업을 위한 윈스톱 전자무역서비스 구축 추진”, 「보도자료」, 2009. 7. 6.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무역업체의 결제 프로세스 전자화 수준 동향파악 보고서”, 「무역업무 프로세스 혁신 BPR」, 2009. 10.
- 한국조세연구원,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관·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2010. 03.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첨단물류 IT 기술”, 「해양한국」, 2010. 4.

ABSTRACT

A Study on Establish the Foundation of Electronic Payment System for the Auxiliary Costs of Foreign Trade

- Focused on Logistic and Customs Clearance Areas -

Shim, Chong seok

Yang, Jung Ho

This study aims to derive practical suggestions to apply application methods by auxiliary costs, especially application of logistics and customs clearance areas in order to establish EPS support system of auxiliary cost occurred from export/import. For the propose, this study has analyzed types and situation of auxiliary costs, application method by auxiliary costs, payment situation of logistics auxiliary costs and clearance auxiliary costs and suggested the relevant problems and their application methods. Especially, in case of logistics auxiliary costs through connection to the attached general documents required for negotiation 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B2B transactions. In addition, it has suggested that those services by the said system should be conveniently used commonly by the export companies and logistics companies through provision of various payment measures, support of foreign currency payment, etc. and security of reliability/system stability, etc. for the compatible payment with other systems as the prerequisit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uxiliary costs EPS. It is expected that satisfaction of the uTradeHub users such as export/import companies and logistics companies will be increased, user-oriented customized information services such as raw cost prediction service through calculation of auxiliary costs could be available in the future and efficiency of work processes related to auxiliary costs will be increased, by providing the EPS through various single window based payment

measures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export/import auxiliary costs payment system.

Key Words : Auxiliary Costs, uTradeHub, EPS, Single Window